주택 경매 예정 통지

수 신 : 김*석 귀하 (640408-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2길 *, 104동 *10호

발 신 :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1층

주택 경매 예정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2길 *, 104동 *10호

주택 경매 신청 예정일 : 2026-08-26 채무조정 요청가능기한 : 2026-08-25

귀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아래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의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당사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채무금액정보] ■ 채권자 :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기준일 : 2026년 08월 05일 (단위 :원)

최초대출기관(또는 양도기관)	채무금액	기한이익상실 유무	입금가상계좌번호
페퍼저축은행 (양도채권)	87,331,238	채권양도전 기한이익 상실	우리은행:29456144918513 예금주:김*석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귀하께서 채무조정 관련 신청을 하셨다면 당사로 즉시 연락부탁드립니다.

▣ 채무 변제금액을 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시까지 가산되며 정확한 채무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통지서를 채무금액을 상환 후 수령하신 경우 폐기부탁드립니다.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에 따라 법조치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기획팀 담당자 : 심성우 (☎ 02-2138-3436)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도봉동, 한밭법조타워) 502호, 503호 대표전화 (☎ 1661-4323)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